

제33차 CODEX 잔류농약분과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서

박 준 경 / 보건복지부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연구위원

의 제 목 록

의제 번호	의 제	관 련 문 서
1	의제 채택	CX/PR 01/1
2	분과위원회 서기 선정	
3	당 분과위원회와 관련된 사항들	CX/PR 01/2
4	1999/2000년 JMPR 일반 검토 사항 보고	
5	MRL 설정과 관련한 식이 노출	
5a	급성 식이 노출 평가	CX/PR 01/3 2000 JMPR Reports
5b	만성 식이 노출 진행 과정에 관한 조사	CX/PR 01/4
5c	현재까지 본 위원회에서 사용되어 왔던 위해분석 원칙 및 방법론	CX/PR 01/5
5d	지역적 식이 개정 및 가공 처리 정보에 관한 보고서	CX/PR 01/6
6	식품 및 사료 중 최대잔류허용기준 (초)안	
6a	GM 농산물 및 대사 잔류물의 MRLs 설정 가능성	CX/PR 01/7
6b	영유아식에 대한 현행 ADI 및 MRL의 적합성	CX/PR 01/8
6c	제 7 & 4단계의 식품 및 사료 중 MRL안 검토	CL2000/49-PR
6d	제 3 & 6단계에 대한 각 국의 의견	CX/PR 01/9-Add.1**

의제 번호	의 제	관 련 문 서
7	농약 및 수의약품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화합물의 MRL 설정시 조화 방안	
7a	제 4단계에 있는 식품 및 동물 사료에 관한 CODEX 분류법 개정안	ALINORM 01/24 Appendix V
7b	제 3단계에 대한 각 국의 의견	CX/PR 01/10
8	잔류농약 분석법 관련 사항	
8a	잔류농약분석에 대한 모범실험실규범(GLP) 지침 기준 개정안	CX/PR 01/11
8b	권장 잔류농약 분석법 서론부(문) 개정안	CX/PR 01/12
8c	잔류농약 분석법 목록 개정	CX/PR 01/13
8d	CCPR 목적에 알맞은 분석법 평가를 위한 변수 및 기준	CX/PR 01/14
9	CODEX의 농약 우선 순위 목록 설정	CX/PR 01/15 CL2000/14-PR ALINORM01/24 Appendix VII)
10	향신료(spices)에 대한 MRL 정밀 검토	CX/PR 01/16
11	위원회에서 일반적으로 고려되어 온 위해분석 구조 중 기타 합법적인 요인에 관한 논의 자료	CX/PR 01/17
12	식품 및 동물 사료에 관한 CODEX 분류법 개정 필요성에 관한 논의 자료	CX/PR 01/18
13	기타 사업 및 향후 작업	
14	차기 회의일시 및 장소	
15	보고서 채택	

I. 회의개요

- 제 33차 CCPR은 미국, 캐나다, 독일 등에서 44개국 대표 169명과 EC, EU, 국제소비자보호단체 및 AOAC international, Consumers international 등 14개 국제기구 및 단체에서 71명 등 총 240명이 참석하여 2001. 4. 2 - 4. 7일까지 개최되었음. 회의 기간중(4. 3) 별도로 시료채취 및 분석법에 관한 working group을 개최하였음.
- 이번 회의는 네덜란드 보건복지 및 체육부의 공중보건국장인 Mr. A.W. Kalis가 개최선언을 하였으며 식품 생산의 세계화 및 무역증가,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고조에 따라, CODEX 역할중 식품안전성의 중요도를 고취시킴. 또한 국제수준의 급성식이평가를 위한 방법과 자료부족, JMPR의 제한된 수용능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음.
- 본 회의에서는 MRL 설정과 관련한 식이 노출, 식품 및 사료 중 최대잔류허용기준 (초)안중 GM 농산물 및 대사물질의 MRLs 설정, 영유아식에 대한 현행 ADI 및 MRL의 적합성, 제 7 & 4단계의 식품 및 사료 중 MRL 안 검토, 제 3 & 6단계에 대한 각국의 의견검토, 농약 및 수의약품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화합물의 MRL설정 시 조화 방안 및 제 4단계에 있는 식품 및 동물 사료에 관한 CODEX 분류 등 15개 의제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 우리나라는 기준설정 검토 6단계중 Chlorpyrifos-methyl의 쌀에 대한 기

준인 10ppm에 대하여 쌀은 동양인의 주식으로 1일평균섭취량이 277g 이므로 10ppm으로 설정할 경우 ADI의 500%를 초과하게 될 것이라는 사유로 현행 기준인 0.1ppm을 고수할 것을 주장한 결과, 동 기준(안)을 JMPR로 되돌려 재검토기로 결정하였음.

- 따라서 향후 적극적으로 CCPR에 참여, 세밀한 검토를 통한 아국의 의견 제출 및 제출한 의견이 최대한 CODEX에 반영되어 잔류농약기준과 관련한 국익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II. 주요의제 및 논의결과

1. 타 분과위원회 관련 사항 (의제3)

- CODEX MRL 설정시 장시간 소요로 발생하는 무역의 문제점 논의
 - 북미 및 남서태평양지역 FAO/WHO CODEX 조정위원회 (the FAO/WHO CODEX Coordinating Committee for North America and South West Pacific, CCNA SWP) 에서 제기된 문제로써
 - 미국 대표단은 농약에 대한 저항성 및 외래질병의 도입으로 인해 새로운 농약이 각 국별로 등록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새로운 농약이 JMPR에서 평가되어 CODEX MRL이 설정되어지는데는 수년간이 소요되어 수출의 어려움 및 국가간에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JMPR에서 평가의 우선 순위를 재조정 또는

잠정 MRL 설정을 제안.

- 스페인대표는 모든 나라들이 이의 없는 CODEX MRL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함을 지적.
- 동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점들에 관심을 표명한 미국 등 여러 국가에 차기회기까지 이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

2. 1999/2000년 JMPR 일반 검토 사항 보고 (의제 4)

- 32차 CCPR에서 식이섭취량이 ADI를 초과하였을 경우 취해야할 방법론에 관해서 몇몇 국가와 제조업체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JMPR은 “그 국가에서 조사된 섭취량 자료는 그 국가차원에서 유용하며 JMPR에서 조사된 추정량을 개선하고자 할 때는 그 수치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림.
- 동위원회는 캐나다대표가 제시한 GMO 및 농약 대사물의 잔류에 관한 MRL 설정은 단독 조사방식이 아닌, 상황에 따라 조사방식이 달리 적용되어야함을 언급하였으며
- JMPR은 최종 결정시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에 관한 OECD 워크샵 보고서 검토에 동의하였으며 각 국의 대표들은 외삽에 필요한 조건들에 대해 논의하였음.
- 또한 JMPR은 현행 국가별로 재등록을 하는 농약의 잔류자료에 대한 정기적 재검토 작업을 현행 사용되는 품목 중 충분한 평가 자료를 갖춘 것에 한하여 먼저 재검토를 하되 GAP 조건을 갖춘 새

롭고 보완된 품목도 검토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렸고 품목 재검토 작업은 각 국가가 재등록 작업을 마칠 때까지 연기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동위원회도 이에 동의하였음.

- 2000 JMPR 보고서 중 JMPR의 의사결정 독립성 유지와 관련하여 2000년 8월에 제제된 ‘담배회사가 WHO의 담배규제활동을 훼손한다’라는 문서에서 1993년 JMPR에서 실시한 ethylenebisdithiocarbamates(EBDCs)와 ethylenethiourea(ETU)의 독성학적 평가를 담배회사로부터 상담비용을 받은 한 전문가로 하여금 실시하여 이러한 물질이 변이원성이 없으며 갑상선 호르몬의 항상성을 교란시키지 않는 농도에서는 암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평가를 하게끔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에 대해 논의했으나 2000 JMPR에서 담배회사와 무관한 올바른 평가라는 결론을 얻은바 있음. 이에 대해 몇몇의 대표단들은 CODEX, FAO, WHO의 투명성 있고 책임성 있는 일처리의 중요성을 표시했음.
- 1995년부터 JMPR은 농약의 독성 평가시 식이 및 비식이노출에 대한 지침기준설정에 포함시켜온 end-points table(a table identifying the end-points)의 유용성에 대한 feedback을 요청했으며 몇몇 대표는 이것(this table)이 매우 유용함을 지적하였고 동위원회는 JMPR이 독성평가지 계속적으로 이들을 포함시킬 것을 장려하였음.

- 동위원회는 JECFA와 JMPR에서 농약과 수의약품으로 쓰여지는 몇몇 제제에 대한 조정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보고했음. 2000 JMPR에서는 animal commodity에 대한 abamectin의 정의를 검토하였음.

3. MRL 설정과 관련한 식이 노출 (의제 5)

가. 급성식이 노출 평가

- WHO는 2000 JMPR에서 작성한 IESTI (International Estimated Short-Term Intakes) 산출에 대해 보고하였고 JMPR은 배; chlormequat, 포도; dinocap, 보리와 사과; parathion에 대한 급성 RfD의 IESTI 초과 여부를 확인 할 수 없었으며 2000 JMPR은 1999 JMPR에서 이행한 IESTI 산출법에 몇가지를 수정하여 작성한 것임을 덧붙여 언급함.
- 동위원회는 각 국가 및 단체에게 연구결과를 JMPR에 제출토록 요구하고 있으며 JMPR은 단지 각국에서 제출된 자료와 평가 방법을 검토하여 국제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주역할이므로 WHO JMPR 사무국에 협조할 것을 촉구하였음.

나. 만성 식이 노출 진행 과정에 관한 조사

- 작년 한해동안 각 지역별 국제기준이 ADI를 초과하였을 경우에 대한 대처 방법을 검토해왔으나 뚜렷한 의견의 일치가 없어 계

속 논의중이며 호주대표가 식이 섭취량이 ADI를 초과하지 않으나 과도하게 설정된 식이 섭취량으로 인해 생겨날 수 있는 문제점을 부각, 여러 각도의 해결책 중 하나로 한 지역이라도 식이 섭취량이 ADI를 초과하였을 때 MRL을 설정하는 것에 대해 검토해 볼 것을 제시한 바 국제수준의 식이 섭취량은 개선되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식이 섭취량이 ADI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MRL 설정을 위한 최종 8단계까지 진행할 수 없음을 재확인하였음.

다. 현재까지 본 위원회에서 사용되어 왔던 위해분석원칙 및 방법론

- 지난해기에서 위원회가 MRL설정과 관련된 원칙 및 방법 적용을 검토하기 위해 요구하였던 자료를 소개하고 위원회는 통합된 위해분석을 요약한 자료에 대하여 감사를 표했음.
- 현재까지 MRL 설정시 이용되는 과정이 하나의 서류로 제시된 바는 없지만 FAO, WHO 지침 및 의견일치된 CCPR 정책, 정기적 검토과정 등에 따르고 있음.
- 따라서 동위원회에서는 현재 CODEX 일반원칙분과위원회에서 위해평가원칙 작업초안을 검토중이며 24차 총회에서 검토할 예정으로 별도의 자료를 만들 필요 없이 총회 권고안에 따를 것을 언급하였음.

라. 지역적 식이 개정 및 가공처리 정보에 관한 보고서

○ 지역 식이

- JMPR이 추진하고 있는 GEMS/Food Consumption Cluster Diets의 모델 시험에 관하여 GEMS/Food European-type 식품이 제안된 GEMS/Food Regional Consumption Cluster Diets로 대체되었을 경우 심한 경우 현재보다 약 60%의 식이노출이 증가함.
- 동위원회는 WHO에 Cluster diets 중의 차이를 평가하기 위해 총 식품섭취량 추정치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에 대해 WHO는 노출평가라는 것은 모든 것에서의 노출을 의미하는 것이고 thiabendazole과 같이 수의약품 용도로 사용되는 것도 고려했음을 언급함.
- 동위원회는 지역적 식이 개발을 지지하였으며 JMPR에서 사용권고 전에 과일류 및 채소류에 대한 MRL 산정 예를 포함한 세부적인 자료가 요구될 것임을 주지시킴. 또한 지역적 식이는 계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GEMS/Food에 따라 진행정도가 보고되어야 함에 동의하였음.

○ 가공처리에 관한 정보

- WHO 대표부는 CL2000/27-PR 문서에 대한 각 국가의 식품가공처리 실기(food processing practices)에 대한 보충 자료를 받지 못했으며 단지 태국에서

가공처리에 대한 자료를 회신했음을 보고함.

- GEMS/Food가 노출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정 가공품목에 초점을 두고 설문조사를 검토하고 있으며 2000 JMPR은 이를 통해 원료농산물의 가공방법에 부족한 자료를 보충할 수 있기를 기대하였음.
- 동위원회는 설문 조사를 통한 정보수집 중단에 동의하였으나 각 정부에 요청한 가공처리에 관한 GEMS/Food의 정보수집은 중요한 사안임을 인지하였음.

4. 식품 및 동물사료 중 최대잔류 농약허용기준 개정초안 (의제 6)

○ GM 농산물 및 대사 잔류물의 MRLs 설정 가능성

지난 회기부터 GM 농산물 및 잔류 대사물에 관한 MRLs 설정이 계속 논의되어 왔으며 관리를 목적으로 한 잔류정의 문제에 중점을 두었음. 동위원회는 각 정부로부터 GM 농산물 MRLs 설정을 위한 정보를 구하는 것에 동의하였음. 동위원회는 GM 농산물 및 잔류 대사물에 관한 MRLs 설정(대사물질의 독성, 잔류 정의 및 식이섭취량 평가 시행)이 사례별로 각 국가의 정책을 고려하는데 동의하고 2000 JMPR의 결론과 일치함을 언급함.

○ 영유아식에 대한 현행 ADI 및 MRL의 적합성

- 동위원회는 영유아를 위한 적합한 MRLs 및 ADI 설정 검토는

영유아뿐만 아니라 모든 인구 집단을 포함해야할 것으로 결론지었으며 영유아의 취약성이 CCPR 및 JMPR의 작업 필요성을 명백히 하는 중요 이슈로써 반복적인 위해 평가 개발, 특히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론 개발에 관한 검토 요구에 동의하였음.

○ 제7 & 4단계에 있는 식품 및 재료 중 최대잔류허용기준 :

CHLORFENVINPHOS(014) 등 66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및 관련 내용에 대해 논의.

CHLORFENVINPHOS (014) : 유용한 새로운 데이터 부족에 따라 모든 CXLs 폐지를 권고

CHLORMEQUAT (015) : 2000년 JMPR에서 재평가되었던 몇 종류의 농산물에 대한 MRLs안은 차기 회기에서 재논의.

CHLORPYRIFOS (017) : MRLs 안 및 현행 CXLs 폐지에 대해 차기회기에서 재검토.

DIAZINON(022) : EC 참관인은 지용성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cattle, goats, pigs, sheep의 간 및 신장 부위에 대한 MRLs안을 유보하여 2001 JMPR에서 가식부 및 지용성 물질에 대한 MRLs 설정 방법론에 대한 재검토를 권고함. 동위원회는 cattle, goats, pigs, sheep의 간 및 신장, 살코기 부위에 대한 MRLs안을 제6단계로 회부하기로

결정함. 또한 2001 JMPR에서 급성 RfD에 대한 평가를 기다리며 cabbages(head), pome fruits에 대한 MRLs 초안을 제5단계로 상정.

ETHOXYQUIN (035) : 2004년까지 독성자료를 요청하였으며 주기적 재평가 절차에 따라 4년간 pear에 대한 현행 CXLs를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

FENITROTHION (037) : 2000 JMPR의 섭취량 관련 연구보고를 언급, 더 이상 지지되지 않는 품목 삭제에 대한 검토를 차기회의에서 논의하는 것에 동의.

FENTHION (039) : 새로운 데이터가 불충분함에 따라 “meat”, “milk”의 CXLs에 대한 폐지를 차기회기에서 검토하기로 결정.

FOLPET (041) : EC 참관인은 급성 RfD를 요구하였으나 GCPF (세계작물보호연합) 참관인은 2000 JMPR에서 CAPTAN에 대한 급성 RfD를 보고하였으므로 이와 유사한 FOLPET에 대한 자료는 필요치 않다고 말함. 이에 따라 동위원회는 5월 1일 전까지 이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함. 또한 프랑스 대표는 apple (GAP), grapes (포도주에서의 대사작용), lettuce, head(불충분한 자료) 등의 이유와 칠레 대표의 grape MRLs이 너무 높다고 지적, MRLs 보류를 언급하였으나 동위원회는

MRLs를 5단계로 상정하고 strawberry는 6단계로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

LINDANE (048) : EC 참관인은 LINDANE에 대한 모든 허가를 취소하였음을 보고함. 동위원회는 carrot, eggs, poultry meat, rape seed, sugar beet, sugar beet leaves/tops를 제외한 모든 CXLs 폐지를 권고하기로 결정.

MALATHION (049) : 1999 JMPR 권고에 따라 제조사에서 지지한 apple, broccoli, cabbages(head), grapes, peach, raspberries (red, black), root and tuber vegetables, strawberries, cereal grains, citrus fruits를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해서 CXLs 철회를 권고하기로 결정함. 또한 MRLs 초안을 5단계로 상정하고 주기적 재평가 절차에 따라 4년간 지지된 농산물에 대한 CXLs를 계속 유지하기로 함.

MEVINPHOS (053) : cabbages (head), common bean(pods and/or immature seeds), leek에 대한 섭취량 평가를 총 지휘해 줄 것을 JMPR에 요청하였으며 차기회기에서 1997 & 2000 JMPR의 권고에 따라 존속되어온 CXLs 폐지를 검토하기로 결정

2-PHENYLPHENOL (056) : 동위원회는 네덜란드 대표에게 JMPR의 급성 RfD 설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 작성을 부탁하였으며 2-PHENYLPHENOL을 post harvest로 처리, citrus 생산에 대해 지적하였으나 일부 사례이며 이와 같은 과일은 최종 단계에서 사용되었음. 또한 가공품목인 orange juice에 대한 몇몇 대표단의 MRLs 설정 논의와 관련 일반적으로 MRL은 설정될 수 없음을 언급함. 동위원회는 citrus fruits에 Po, citrus pulp (dry)와 orange juice에 PoP 추가하고 모든 MRLs 초안을 제5단계로 상정하고 pear에 CXL을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

PARATHION (058) : 동위원회는 차기회기에서 2000 JMPR 권고에 따라 대부분의 CXLs에 대한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폐지를 검토하기로 결정하였으며 JMPR 2000에서 섭취량 확인하여 차기회기에서 apple의 MRLs 개정 및 barley의 새로운 MRLs를 검토하는 것에 동의.

PARATHION-METHYL (059) : 동위원회는 차기회기에서 2000 JMPR 권고에 따라 대부분의 CXLs 및 MRLs 폐지를 검토하기로 결정함. beans, dry; cabbages, head; peas (dry); potato, sugar beet의 CXLs 지속 및 beans forage (green); hay or fodder (dry) of grasses; sugar beet, leaves or tops; wheat; wheat bran unprocessed; and wheat straw and fodder, dry의 MRLs에 대하여 검토될 것임

PHOSALONE (060) : 동위원회는 pome fruits와 stone fruits에 대한 MRLs를 제5단계로 상정하기로 결정함. 2001 JMPR에서 급성 RfD를 설정할 것임. Almonds, hazelnuts, walnuts은 24차 총회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6 & 7단계를 생략하고 5/8단계로 상정하였음. EC 참관인은 pome fruits와 stone fruits에 대한 MRLs 상정을 유보(급성 RfD 자료 부족)할 것을 언급함.

PYRETHRINS (063) : 차기회기에서 건과일류(dried fruits)를 제외한 모든 품목의 CXLs 폐지를 검토하기로 결정함.

THIABENDAZOLE (065) : 스페인대표는 tropical fruits에 thiabendazole을 사용하고 있으며 제조사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음. 프랑스대표는 동물성 제품에 대한 잔류량의 문제에 주목할 것을 제기함. 동위원회는 24차 총회 채택을 위하여 난류에 대한 MRLs를 6 & 7 단계 생략, 5/8 단계에 상정하였으며 미국에서 GAP를 수정, JMPR에 새로운 GAP 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3단계에 있는 버섯의 MRLs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음.

CYHEXATIN (067) : apple, citrus fruits, grapes, meat (from mammals other than marine mammals), milk products, milks, pear를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한 CXLs 폐지를 권

고하였으며 common bean, cucumber, egg plant, gherkin, melons, except watermelon, peppers (sweet), strawberry, tomato의 CXLs 철회를 권고함. 현행 유지되고 있는 모든 CXLs와 MRLs는 2003 또는 2004년까지 검토될 것임.

BENOMYL(069)/ CARBENDAZIM(072)/ THIOPHANATE-METHYL (077) :

동위원회는 JMPR 잔류량의 변경에 동의하고 차기회기에서 잔류량의 문제에 관해 검토할 것을 결정함. 위원회는 peaches, nectarines, apricots에 사용된 benomyl 확인을 하기 위한 미국과 EC GAP에 관해 정보를 주었으며 몇몇 대표단에 의해 peaches, nectarines, apricots의 외삽이 지지되었음. 동위원회는 apricots의 MRLs를 0.1에서 2 mg/kg으로 수정하고 apricot, nectarine, peach, plums (including prunes), pome fruits, tomato를 8단계 상정하기로 결정함. 또한 berries and other small fruits, cereal grains, lettuce(head), peppers를 6단계로 회부하는데 동의함.

DISULFOTON (074) : CI 참관인은 급만성 섭취 위해에 관한 명백한 검토자료가 제출될때까지 유보할 것을 언급함. 제조사는 rice, sorghum, sorghum forage (green)에 대한 MRLs를 지지하지 않으며 EC 참관인은 향후 EC내에서 모든 MRLs를 폐지할 것이라고 말함. 동위원회는 rice의 CXLs 폐지 및 sorghum, sorghum forage

(green) MRLs 초안 철회에 동의함. 또한 현재 지속되고 있는 모든 MRLs을 6단계로 상정하고 차기회기에서 검토하기로 하였음. 동위원회는 차기회기까지 WHO에 급성 섭취량 평가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였음.

PROPOXUR (075) : 차기회의까지 더 이상의 지지가 없으면 모든 CXLs 폐지를 검토할 것임.

THIOPHANATE-METHYL (077) : 제조사 대표는 apricots, beans (dry), beans snap, beans forage & hay, celery, cherries, melons, peanuts, peanuts forage & hay, peppers, potatoes (seed treatment), sheep meat, soya beans, squash, sugar beet roots & tops에 대하여 2002 JMPR 연구에 유용할 새로운 잔류 정보를 위원회에 제공함.

VAMIDOTHION (078) : 제출자료가 없을 경우 현행 CXLs 폐지 권고.

CHLOROTHALONIL (081) : 미국은 잔류 데이터를 기초로 바나나의 MRLs을 상향 조정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위원회는 0.01 mg/kg를 8단계에 상정하기로 함.

DICHLORFLUANID (082) : 동위원회는 제조사에 dichlofluanid 등록 사용에 관한 정보를 요청함.

차기회기에서 CCPR의 정보를 기초로 등록 사용되지 않은 품목에 대한 CXLs 폐지에 대해 검토할 것임. 프랑스대표는 1985년 이후 dichlofluanid에 대한 독성 평가가 없었고 GAP는 소용없는 것임을 지적, CXL 폐지를 제안했음. 동위원회는 dichlofluanid 대신 tolylfluanid를 사용하지 않고 현행 CXLs를 유지하기로 함.

FENAMIPHOS (085) : 동위원회는 MRLs 초안을 5단계로 산정하고 섭취량 평가가 결정될 때까지 7단계 이후 상정을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음. 1999 JMPR 권고에 따라 broccoli, cauliflower, coffee beans(including roasted), kiwifruit, oranges(sweet, sour), potato, soya bean(dry), sugar beet, sweet potato에 대한 CXLs 폐지를 권고함. 또한 차기회기 때까지 MRLs 초안 및 현행 CXLs에 대한 검토를 연기하고 각 대표들에게 대책안을 요청했음.

DINOCAP (087) : JMPR 2000은 일반인에 대한 RfD 및 출산적령기 여성에 대한 급성 RfD를 재검토하였음. 새로운 섭취량 평가결과는 IESTI에서 어린이와 출산적령기 여성에 대해 grape의 dinocap 기준이 초과한 것으로 나타남. 제조사대표는 북유럽에서 재배되는 매우 높은 잔류수준을 나타내는 wine grape에 대한 자료(남유럽에서 재배되는 grape는 잔류량이

더 낮음)를 기초로 작성한 MRL/STMR 섭취량에 동의하지 않음. 동위원회는 유럽 GAP를 근거로 작성된 grape MRLs 초안이 없으므로 차기회기에서 검토하기로 함.

CHLOPYRIPHOS-METHYL

(090) : 호주대표는 CXPR01/9 (Addendum 2)에서 NEDI(estimated national daily intake)결과에 호주의 GAP에 따른 섭취량이 없으며 GEMS(5개 지역)에 대한 국제식이섭취량평가 또한 chlorpyrifos-methyl 섭취량이 모든 식이에서 ADI(0.01mg/kg b.w)보다 낮게 나타난 것을 언급함. 몇몇 대표는 급성 RfD 미설정에 대해, 한국대표는 쌀의 섭취량을 고려해 줄 것과 모로코는 섭취량 및 통상 관련(곡류)하여 의견을 표명함. 동위원회는 JMPR에서 충분한 재검토가 있을때까지 모든 MRLs 초안을 6단계로 회부하기로 결정.

CARBOFURAN (096) :

동위원회는 EC 요청(급성 RfD 미설정, 유보) 및 mandarin, oranges(sweet and sour) 등 citrus fruits 외삽(extrapolation)을 지지한 스페인 의견에 대해 언급. mandarin에 대한 MRL 초안을 5단계로 상정하고 6단계에 제안되었던 MRLs안을 2000 JMPR의 재검토가 끝날 때까지 회부하기로 결정.

METHAMIDOPHOS (100) :

EC는 peach, pome fruits, tomato에

대한 MRLs를 수락할 수 없으며 6단계 이후로 진전되기 전에 모든 소비자 그룹에 대한 급성 RfD 설정 및 급성 위해 평가를 요청하였음. 미국은 6단계 MRLs에 대한 급성식이섭취량 조사를 JMPR 2002까지 연기할 것을 요청함. pome fruits, peach, tomato, peppers (chili and sweet), cucumber, cauliflower, cabbages, head; potato, sugar beet, sugar beet leaves or tops, soya bean (dry), cotton seed의 CXLs/MRLs 초안은 제조사에서 지지, celery, tree tomato, watermelon, lettuce, head; brussels sprouts, rape seed, hops (dry)는 더 이상 지지되지 않았음. 따라서 위원회는 JMPR에서 재검토될때까지 pome fruits, peach, tomato의 MRLs 초안을 6단계로 회부하고 cabbages (head), cauliflower, cotton seed, cucumber, peppers (chili and sweet), potato, soya bean (dry), sugar beet, sugar beet leaves and tops에 대한 CXLs은 존속시키기로 결정함. cattle(fat and meat), sheep (fat and meat), goat(fat and meat), milks, alfalfa forage(green), lettuce (head), tree tomato는 동물사료로 사용되거나 acephate사용으로 잔류되었을 때에 한하여 유지하기로 결정.

PHOSMET (103) :

동위원회는 JMPR에서 재검토가 이루어질때까지 apricot의 MRLs 초안을 6단계로 회부하기로 함. 또한 EC와 독

일의 급성식이섭취량 관련 의견요청에 따라 미국에게 apricot, nectarine의 CXLs 지지에 관한 잔류 데이터 제출을 부탁하였음.

ETEPHON (106) : EC 참관인은 grapes(연구과정 불충분), peppers, pineapples, tomato(데이터베이스 불충분)의 MRLs를 유보할 것을 표명함. 프랑스와 독일대표도 grapes(연구과정 불충분) MRLs 유보를 요청함. 동위원회는 dried grape MRLs에 대해 6 & 7단계 생략, 8단계로 상정하기로 결정.

PROPARGITE (113) : 동위원회는 네덜란드대표에게 급성 RfD 관련 의견을 JMPR에 제출하도록 부탁함.

TRIFORINE (116) : 동위원회는 tree tomato의 CXL을 폐지하기로 결정.

ALDICARB (117) : 2001 JMPR 재검토가 연기됨에 따라 potato의 MRLs를 6단계로 회부.

PERMETHRIN (120) : 동위원회는 네덜란드대표에게 JMPR로 급성 RfD 관련 의견을 제출하도록 부탁하였으며 차기 회의에서 재검토될때까지 모든 CXLs을 계속 유지할 것을 결정.

AMITRAZ (122) : EC 참관인은 EU의 급성 RfD는 JMPR 평가에

서 벗어나지 않았음을 알림. (32차 회의에서 위원회가 EC에 자료 요청한바 있음.)

MECARBAM (124) : 동위원회는 차기회의에서 CXLs 폐지를 논의하기로 결정.

AZOCYCLOTIN (129) : 동위원회는 apple, nectarine, peach, pear, plums(including prunes)의 MRLs와 citrus fruits, grapes, meat(from mammals other than marine mammals), milk products, milks의 CXLs을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함. 또한 common bean(pods and/or immature seeds), cucumber, egg plant, gherkin, melons(watermelon, peppers sweet, strawberry 제외)의 CXLs와 tomato MRLs안 폐지를 권고하기로 결정.

METHIOCARB (132) : 독일대표는 데이터가 불충분하므로 유보할 것을 표명, GCPF 참관인은 2002년 말에 storage stability관련 연구 및 artichoke globe, rape seed, sugar beet and sweet corn(corn-on-the-cob)를 지지하기 위한 자료로 제공될 것임을 보고함.

BITERTANOL (144) : 동위원회는 peaches에서 apricots까지 외삽(extrapolation)을 검토하기 위해 1년간 apricot의 CXLs를 유지하고 banana, cucumber, nectarine, peach, plums(including prunes),

pome fruits의 CXLs도 계속 지속 하도록 결정함. 또한 bean forage (green), common bean(pods and/or immature seeds), peanut, peanut forage(green)의 CXLs은 폐지 권 고하기로 함. 현행 CXLs를 삭제 (5단계에 있는 tomato를 제외)하 고 MRLs 초안을 5/8단계로 상정 하였음.

CARBOSULFAN (145) : 동위원 회는 스페인대표에게 JMPR에 citrus fruits에 대한 GAP 정보를 제공하 도록 요청하고 mandarin의 MRLs 초안을 5단계로 상정, citrus pulp, dry and oranges(sweet, sour)에 대한 MRLs 초안을 6단계로 회부하 였음.

CYHALOTHRIN (146) : 동위원 회는 54차 JECFA에서 JMPR 보 다 낮은 ADI를 설정한 것을 언급 하였음. 식품섭취량은 JECFA와 CODEX MRLs 모두 ADI를 초과 하지 않았음.

DIMETHIPIN (151) : 동위원회는 네덜란드 대표에게 ADI 평가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JMPR로 보내줄 것을 요청함.

FLUCYTHRINATE (152) : 모든 CXLs 폐지를 권고하기로 결정.

PYAZOPHOS (153) : 모든 CXLs 폐지를 권고하기로 결정.

CYFLUTHRIN (157) : 동위원회 는 EC가 CCRVDF에서 JECFA에 의해 ADI가 설정되는 것에 동의 하지 않음을 언급하고 차기회기 에서 cyfluthrin에 대해 재논의하 기로 함.

PACLOBUTRAZOL (161) : 동위 원회는 각국으로부터 이 화합물에 대해 지지된 바 없음을 주목함.

ALILAZINE (163) : 동위원회는 anilazine이 지지되지 않았음을 주 목하고 차기회기에서 모든 CXLs 폐지를 검토하기로 하였음.

FLUSILAZOLE (165) : 동위원회 는 flusilazole에 대한 지지 자료를 요청하고 차기회기에서 재논의하 기로 결정.

OXYDEMETON-METHYL (166) : 동위원회는 EC가 grapes, lemon, oranges(sweet, sour)에 대 한 MRLs(급성 RfD 결여 및 급성 위해 관련) 유보 표명에 주목하고 MRLs 초안을 6단계로 회부하였음.

TERBUFOS (167) : 동위원회는 barley, cereal grains(straw and fodder, dry)에 terbufos 사용에 대 한 지지가 더 이상 없을 경우 차 기회기에서 철회를 검토하기로 함.

HEXACONAZOLE (170) : 동위 원회는 hexaconazole에 대한 지지 자료를 요청하고 차기회기에서 재

논의하기로 결정.

PROFENOFOS (171) : 동위원회는 brussels sprouts, cabbages (head), cauliflower, common bean (pods and/or immature seeds), oranges(sweet, sour), soya bean (dry), soya bean oil(refined), sugar beet에 대한지지 자료가 없음을 주목하고 차기회기에서 이들 CXLs 철회를 검토하기로 결정.

BENTAZONE (172) : 동위원회는 네덜란드 대표에게 급성 RfD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JMPR로 보내줄 것을 요청했음.

BUPROFEZIN (173) : 동위원회는 processing data 불충분에 대한 독일의 의견서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oranges(sweet, sour)의 CXLs를 8단계로 상정하기로 결정.

GLUFOSINATE-AMMONIUM (175) : 모든 MRLs 초안을 5단계 상정.

HEXYTHIAZOX (176) : See Annex II

ABAMECTIN (177) : 동위원회는 모든 농산물의 새로운 잔류정의와 관련한 독일의 의견에 대해 언급하고 동물성 원료 식품에 대한 MRLs 초안을 모두 8단계로 상정하기로 결정.

CLETHODIM (187) : 동위원회는 JMPR 2001 보고서에 섭취량 추정자료가 정정되었고 그 결과는 ADI를 초과하지 않았음을 공지하였음. 위원회는 적합한 분석법이 없음을 언급, 모든 MRLs 초안을 5단계로 상정하고 모든 6단계 MRLs 초안을 회부하였음. 또한 clethodim의 잔류분석 방법과 관련하여 차기회기에서 재검토하기로 결정.

FENPYROXIMATE (193) : 프랑스대표는 grapes의 wine으로 이전 가능성 때문에 MRLs 결정을 유보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네덜란드대표는 apple에 대한 급성 RfD가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MRLs 설정 유보를 표명함. 동위원회는 모든 MRLs를 5단계로 상정하기로 결정.

HALOXYFOP (194) : 동위원회는 haloxyfop에 대한 2001 JMPR 보고서를 주목하고 차기회기에서 재논의하기로 함.

TEBUFENOZIDE (196) : 동위원회는 2001 JMPR에서 급성 RfD 설정을 논의할 것이며 grape의 MRLs를 6단계로 회부하기로 하였음.

AMINOMETHYLPHOSPHONIC ACID (AMPA) (198) : 동위원회는 더 이상 관련 없음에 따라 MRLs를 삭제.

KRESOXIM-METHYL (199) :

동위원회는 EC 참관인에게 동물성제품의 잔류정의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JMPR로 보내줄 것을 요청했음.

PYRIPROXIFEN (200) :

동위원회는 미국의 grapefruit 데이터베이스와 orange에 대한 데이터에 따라 citrus fruits에 대한 MRLs를 1.0에서 0.5로 수정하기로 하고 8단계로 상정하였음. 나머지 다른 MRLs는 5단계로 상정하기로 결정하였음. 독일대표는 cotton seed oil(crude and edible)에 대한 연구 자료가 불충분하므로 유보해줄 것을 말했고 프랑스대표가 독일대표 의견을 지지하였음.

DDT (021) :

동위원회는 31차 CCPR에서 1999 JMPR 평가를 기초로 DDT의 EMRL 설정에 대해 검토하기로 하였음을 상기하고 JMPR 재평가에서 PTDI가 0.01 kg/kg bw.으로 새롭게 설정되었음을 언급하고 meat(mammals, marine mammals) MRL의 적당한 수준에 관해 논의할 것을 각 대표들에게 요청함. 뉴질랜드 및 호주 대표는 5 mg/kg, 스웨덴(EU 대표),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스위스, 캐나다 대표는 호주, 독일, 노르웨이, 태국, 영국, 미국의 데이터를 기초로 violation rate 0.5%에 해당하는 1 mg/kg에 찬성하였음. 그러나 스웨덴 및 뉴질랜드 대표는 1996 JMPR 보다 더 최근의 자료를 요

청하고 스웨덴 대표는 1 mg/kg와 5 mg/kg에 대한 의견이 매우 분분한 상황 해결을 위해 2 mg/kg도 수락할 수 있음을 표명 하였음. 몇몇 대표들은 DDT 기준을 높게 설정하는 것에 반대하였음. 의장은 2000년 JMPR에서 식이섭취량 평가에 따라 5 mg/kg으로 확인된 것을 언급하고 뉴질랜드의 데이터에 따라 violation rate 0.5%에 해당되는 수준인 3 mg/kg을 제안함. 미국은 통상용이 및 공공위생보호를 위해 3-5 mg/kg를 제안하였고 호주와 남아공이 지지하였으나 위원회는 타협안을 도출하지 못했음. 따라서 5 mg/kg과 3 mg/kg을 각괄호(square bracket) 처리하여 총회에 상정하고 JMPR에 모니터링 자료 평가를 요청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 스웨덴 대표는 결정 유보를 강력하게 표명하였고 캐나다,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스위스도 이 결정에 반대하고 1 mg/kg을 지지하였음.

5. 농약과 수의약품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화합물의 MRL 설정시 조화 방안 - 식품 및 동물사료의 CODEX 분류법 개정초안 (의제 7)

○ 식품 및 동물사료의 CODEX 분류 개정 초안 현황

- 동위원회는 고기, 동물지방, 가공류 지방과 우유에 대한 정의를 위한 개정안에 동의하였으며 급행수순 5단계로 24차 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정.

6. 잔류농약 분석법 관련 사항 (의제 8)

- 분석 및 시료채취법 특별작업단 회의 결과 보고
 - 작업단의 의장 Dr. Van Zoonen (네덜란드)이 CRD 16에 제시된 작업단의 논의안과 추천안을 제시, 작업단은 잔류농약분석에서 GLP 가이드라인 개정초안을 작성하였으며 분석법의 유용성 평가를 위한 기준안과 서론 부분의 개정안 초안을 포함, 추천 분석법을 개정하는 방법을 검토하였음.
 - 동위원회는 분석방법 설정을 위한 기준안 정의에 관하여 CCRVDF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과 CODEX를 통한 조화의 중요성을 인정하였으며 CCMAS는 회수율과 관련된 인자들의 사용에 대한 접근에 대한 결론에 도달하여 측정 불확실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관한 추천안을 최근에 개발하고 있다고 보고하였음.
 - 동위원회는 복잡한 문제에 대한 Dr. Van Zoonen과 작업단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표하였으며 차기 회기에 다시 소집하기로 하였으며 CRD 16에 제시된 작업단의 추천안에 동의하였음.
- 잔류농약 분석에 대한 모범실험실 규범(GLP) 지침기준 개정안
 - 가이드라인에 대한 개정은 제47차 집행이사회에서 새로운 업무로 승인되었으며 요청된 개정 가이드라인 초안을 보고서에 추가

하고 검토를 위하여 3단계에서 시작할 것을 승인하였음.

- 동위원회는 CCMAS에서 해결될 때까지 보류하는 것에 동의하였음.
- 권장 잔류농약 분석법 서론부(문) 개정안 ; (a), (b)의 개정안은 제47차 집행이사회에서 승인된 것으로 네덜란드에서 작성.
 - Single-laboratory validation을 일반적으로 인정하기 위하여 동위원회는 서론 부분의 개정안을 제47차 집행이사회의 새로운 업무로 승인되었음.
 - 잔류농약 추천분석법의 서론에 대한 개정 초안은 보고서에 첨부되었으며 3단계 상정에 동의.
- 잔류농약 분석법 목록 개정
 - 동위원회는 분석 추천방법의 최신 목록은 CL 1998/20-PR의 최신 정보를 고려하여 가이드라인과 서론의 개정 문장에 포함된 기준을 근거로 작성하는 것에 동의하였음. 분석법 개정 목록은 차기회기에서 재검토를 위하여 유보될 것임.
- CCPR 목적에 알맞은 분석법 평가를 위한 변수 및 기준
 - 동위원회는 Table 3에 있는 가이드라인 개정 및 권고분석법 도입 개정 초안에 parameters, criteria를 포함시키는데 동의하였음.

7. CODEX의 농약 우선 순위 목록 설정 (의제 9)

- 우선순위 설정시 적용될 사항.
 - JMPR에서 확인된 급성독성평가

- 농약들은 급성독성평가를 위한 후보물질로 우선순위에 추가하여야 함.
- 어느 국가나 급성독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농약들을 지정할 수 있음.
 - 급성독성은 새로운 화합물과 주기적 재평가에 따른 농약에 대해 평가되어야 함.
- 동위원회는 CCPR이 우선순위에 새로운 화학물질과 재평가 물질을 50:50 비율로 두는 권고안지지.
- JMPR이 농약평가시 최종적인 국가검토안이 결정되기 전에 각 국가의 검토안을 고려할 수 있도록 JMPR에 각 국가의 독성 및 잔류검토안을 제출하도록 권고.
- 우선순위 설정시 우선되어야 하는 농약
- 국민건강과 크게 관련된 섭취 및 독성측면의 농약
 - 국민건강전망에 따른 현재 검토 대상 농약을 대신할 잠재성을 지닌 새롭고 안전한 농약 (예 : 저위해성 농약)
 - 국가적인 검토안이 이용될 수 있는 농약
 - 동시에 검토될 수 있도록 평가 예정된 화합물과 관련된 농약
 - 무역장애 의한 실제적 또는 잠재적 손실을 주는 농약
- 이성체 혼합물
- 여러 경우에 더 이상 지지되지 않는 이성체의 혼합물을 대체할 순수 이성체가 우선순위 목록에 추가될 것이며 만일 농약의 이성체 혼합물이 어떠한 제조회사에

서도 지지되지 않을 경우 CODEX MRL 폐지가 권고될 것임.

○ 새로운 화합물

- cyprodinil, fludioxonil, trifloxystrobin, dimethenamid-P, methoxyfenozide 등 5종의 화합물질을 우선순위 목록에 추가할 것을 스위스, 독일, 미국이 제안하였음.

- anilazine과 propoxur은 주기적 재평가를 받지 않았으며 hexaconazole과 paclobutrazol에 대한 지원의사가 제시되지 않았고 평가 예정된 fenvalerate에 대한 지지의사가 차기 회기에 요청될 것임.

○ 항생물질

- 멕시코는 gentamicin과 oxytetracycline을 우선순위 목록에 첨가할 것을 32차 CCPR회기에서 제안하였으나 그 당시 동위원회는 이에 대한 결정을 유보, 이번 회기에서도 결정할 수 없어 CODEX 잔류수의약품분과위원회(CCRVD F)를 포함한 다른 위원회와 협의를 요청하기 위하여 CAC에 그 문제를 회부하였음.

○ 우선순위 목록

- 우선순위 목록은 Appendix IX에 첨부되어 있으며 2003년 이후에 대한 스케줄에 대략 50:50 비율로 새로운 농약 및 주기적 재평가 목록 농약을 평가하기로 한 이번 회기의 결정사항을 수용하기 위하여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고하였음. JMPR 사무국은 독성검토(사본 3부) 및 잔류성 검토(사본 4부)에 대한 서류가 필요하며 전자양식으로 제출할

것을 장려하였음.

- 동위원회는 의장 Dr. Doust의 주도에 따라 우선순위 특별 작업단을 차기 회기에 소집할 것에 동의하였음. 활동은 2002 이후 JMPR의 농약스케줄 검토와 우선순위 선정 기준을 요약하는 서류 작성 및 JMPR 작업 절차 과정에 관한 FAO/WHO 사무국에서 작성한 보고서 검토를 포함함.

8. 향신료(spices)에 대한 MRL 정밀 검토 (의제 10)

- 제32차 회기에서 향신료 MRL 설정에 관한 인도의 요청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각 국가들에게 관련 정보를 요청, 향신료 MRL/EMRL 설정의 필요성이 인지되었으나 향신료에 대한 극히 일부의 잔류시험 데이터만이 이용되고 있으며 향신료는 소량 생산·소비되기 때문에 한 국가에서만 향신료에 대한 특별 가이드 라인을 가지고 있음.
- 동위원회는 이점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으며 GAP 및 시험데이터의 부족 때문에 MRL 설정 과정을 충분히 요청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며 향신료의 소비량이 적은 것에 비추어 섭취 문제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함.
- 향신료를 수출하고 수입하는 국가들은 CODEX MRL이 없기 때문에 국제 무역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음.
- 인도대표는 문제의 복잡성을 지적하면서 모니터링 데이터에 기초한

MRL/EMRL 설정을 제안하고 DDT, Lindane 및 BHC의 잔류모니터링 성적을 제출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음.

- 동위원회는 농약들이 향신료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데 관심을 나타내고 EMRL 설정은 환경오염 때문에 필요 할 것이라고 인정하였으나 데이터 부족으로 JMPR에서 거부할 것이라고 논의하였음.
- 동위원회는 남아프리카,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대표 그리고 향신료 무역업자 연합회가 향신료/농약 복합 물질, GAP정보 이용성 및 통상문제에 관한 정보와 함께 잔류데이터(현장실험 및 모니터링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한 간략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동의하였음. 또한 이 보고서는 향신료에 대한 MRL/EMRL 설정에 있어서 정책지침을 고려하여야 한다는데 동의하였음.

9. 위원회에서 일반적으로 고려되어 온 위해분석구조 중 기타 합법적인 요인에 관한 토의 자료 (의제 11)

- 의장은 동위원회 및 CODEX조직에서 기타 적법한 요인의 사용과 위해분석을 명백히 하는 것과 향후 위해평가 및 위해관리의 관련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CCGP와 CODEX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이 분야에 대한 논의는 유보되는 것이 좋을 듯하다고 말함.
- 동위원회는 결정과정에서 기타 요

인의 역할 및 위해분석원리 적용과 관련하여 CODEX위원회에 일반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음. 의장은 의제 5와 관련하여 이들 문제에 대한 접근방안을 동위원회와 직면한 실제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을 지적하였으며 동위원회는 이 접근방안에 동의하였음.

10. 식품 및 동물사료에 관한 CODEX 분류법 개정 필요성논의 자료 (의제 12)

- 동위원회는 각 국의 가장 최근 분류안 및 새로운 품목추가에 대한 정보를 회람문서를 통해 수집하여 일본, 뉴질랜드, 스웨덴, 미국 및 WHO의 도움을 받아 네덜란드대표가 차기회의까지 검토문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하였음.

11. 기타 사업 및 향후 작업 (의제 13)

- 급성 식이 위해성평가
 - 위해분석에 관한 초기 논의에 따라, 의장은 적합하고 용이한 위해관리 선택을 위하여 급성식이 노출이 RfD를 초과할 때, 특히 CCPR의 정책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급성노출평가에 관한 문제들을 계속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음.
 - 미국과 네덜란드대표는 호주 대표와 CI 및 GCPF와 함께 급성식이노출 평가 개발에 대한 차

기회기 검토문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음.

12. 차기 회의일시 및 장소 (의제 14)

- 제34차 CCPR은 주재국 및 CODEX 사무국에 의해 확정된 주제에 따라 2002년 5월 13일부터 18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우선 순위 특별작업반은 2002년 5월 11일에 소집될 것임.

Ⅲ. 향후대응방안

- 잔류농약허용기준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피력하고 국제화 하기 위해서 CCPR은 물론 JMPR등 분야별 전문 평가단에 국내 전문가의 지속적인 참여가 필요함.
- 따라서 CODEX 기준 중 우리나라 기준과 상이한 것은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차기 CCPR 의제로 제출함으로써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우리나라 기준설정의 타당성을 인식시키고 CODEX의 잔류농약 관련 기준·규격 등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수집하여 식품중 잔류 농약 관리를 위한 보완 자료로 활용함.
- 또한 선진국 수준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설정 운용을 위하여 국내 사용등록 농약의 작물에 대한 최신 잔류자료 확보하고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를 철저히 시행하여 기준 설정에 적용함과 동시에 신규등록농약(품목/작물)은 등록요건

에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의무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 잔류기준 설정시 Major 와 Minor로 구분하여 Major는 개별 농산물별로, Minor는 그룹별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고려해야함.
- 기존 농약잔류허용기준은 새로운 지침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정 하고 현재 농약잔류허용기준의 정기적인 검토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국내 식품 섭취량 조사의 다양화 및 Total Diet Study 실시를 제안함.

IV. 24차 총회 상정안

□ 8단계 (ALINORM 01/24 Appendix II, ALINORM 01/24A Appendix II)

- 메빈포스 등 8단계 상정된 17종 농약 중 우리나라와 기준이 상이한 MRLs
 - 디치오카바메이트 : 자두 7.0, 복숭아 7.0, 딸기 5.0
 - 마이크로부타닐 : 복숭아 2.0, 살구 2.0, 자두 2.0
 - 에세폰 : 파인애플 2.0
 - 부프로페진 : 오렌지 0.5

□ 5/8단계 (ALINORM 01/24 Appendix III, ALINORM 01/24A Appendix III)

- 2,4-D 등 5/8단계 상정된 13종 농약 중 우리나라와 기준이 상이한 MRLs
 - 2,4-D : 쌀 0.1, 호밀·밀 2.0

□ 5단계 (ALINORM 01/24 Appendix IV, ALINORM 01/24A Appendix V)

- 2,4-D(020) 등 5단계 상정된 25종 농약 중 우리나라와 기준이 상이한 MRLs 초안
 - 2,4-D : 쇠고기·돼지고기·양고기·말고기·염소고기 0.2
 - 디메토에이트 : 토마토 2.0, 포도 2.0, 완두1.0, 자두 1.0
 - 퀴토젠 : 양배추 0.1, 콩류 0.02, 피망 0.05
 - 다이아지논 : 양배추 0.5, 배 0.3
 - 폴벳 : 사과·포도 10.0, 오이 1.0, 양상추 50.0, 토마토·멜론 3.0
 - 말라치온 : 아스파라거스 1.0, 대두·녹두·기타콩류 2.0, 수수 3.0
 - 페나미포스 : 토마토 0.5
 - 글루포시네이트암모늄 : 대두 2.0

□ 급행수순 5단계 (ALINORM 01/24A Appendix IV)

- 32차 회의에서 Meat, Mammalian fats, Poultry fats의 용어정의 중 “fatty tissue”를 “fat tissue”로 할 것과 milk의 정의 일부 설명을 삭제할 것을 제안 (3단계)하였으며 33차 회의에서 이에 대해 급행 수순 5단계로 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함.

□ 기타 안건

- 2,4-D 등 26종에 대한 일부 품목에 대하여 현행 CODEX MRLs을 삭제하는 안건으로 ALINORM 01/24

Appendix VI, ALINORM 01/24A Appendix VI를 참고하기 바람.

- 신규 및 재검토 대상 농약에 대한 JMPR의 우선순위 목록으로써 MRL이 설정되어 있는 농약 및 등록 농약 중 평가 및 재평가가 필요한 농약의 우선적 평가 (ALINORM 01/24 Appendix VII, ALINORM 01/24A Appendix IX)

□ **쟁점사항 (24차 총회에서 재논의
기로 한 사안)**

- DDT의 현행 CODEX EMRLs가 5.0 mg/kg인 meat (mammals, marine mammals) MRL의 적당한 수준에 관해 논의한 바 각 국 대표들이 각각 5.0, 3.0, 2.0, 1.0 mg/kg을 제안·지지, 타협안을 도출하지 못

했음. 따라서 5 mg/kg과 3 mg/kg을 각괄호(square bracket) 처리하여 총회에 상정, 재검토하기로 하였음. (ALINORM 01/24A, para 195)

- 멕시코가 항생물질인 gentamicin과 oxytetracycline을 우선순위 목록에 추가할 것을 32차 CCPR회기에서 제안하였으나 이에 대한 결정을 유보, 금번 회기에서 재논의 결과 많은 국가들이 항생물질 내성 등의 이유로 반대하였음.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 우선순위 목록에 추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따라 동위원회는 CODEX 잔류수의약품분과위원회(CCRVDF)를 포함한 다른 위원회의 협의를 요청하기 위하여 CAC에 회부하기로 하였음.(ALINORM 01/24A, para 222)

V. 작업상황 요약표

- 제33차 CODEX잔류농약분과위원회 회의결과 -

의 제 내 용	단계	집행기구	참 고 (ALINORM 01/24)
MRLs 안	8	24차 총회	Appendix II
MRLs 초안	5/8	24차 총회	Appendix III
식품 및 동물 사료에 대한 CODEX 분류법 개정 초안	5	24차 총회	Appendix IV
MRLs 안	7	JMPR, CCPR	CX/PR 01/9
MRLs 초안	5	24차 총회 각 국의 정부 34차 CCPR	Appendix V
MRLs 초안	6 and 3	사무국 각 국의 정부 CCPR	Annex I
잔류농약 분석에 관한 모범실험실 규범(GLP) 지침 개정 초안	3	각 국의 정부 국제 기구 34차 CCPR	para. 204, Appendix VII
권장 잔류농약 분석법 서론부에 대한 개정 초안	3	각 국의 정부 국제 기구 CCPR	para. 207 Appendix VIII
새로운 작업 : 농약의 우선 순위 목록 (새로운 농약 및 정기 재평가 농약)	1	24 총회 각국의 정부 호주, CCPR	Appendix IX
잔류농약 분석법 목록 개정	-	네덜란드	para. 208
토론 보고서 :			
- 누적 위험도 평가		USA	para. 78
- 급성 노출 평가		USA, 호주, CI 네덜란드, GCPF	para. 246-247
- 향신료에 대한 MRLs 설정 작업			para. 225-234
- 식품 및 동물사료에 대한 CODEX 분류법 개정	2	네덜란드, 일본 뉴질랜드, 스웨덴 USA, WHO	para. 241-245
- MRLs 설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역상 취약성		USA, 호주, 브라질 캐나다, 칠리, 남아공 뉴질랜드, EC, GCPF	para. 6-12